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28 (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11.04 (화)
- 다. 상정일자 : 2008. 11.04 (화)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도시과장 이영목)

가. 「경관법」(07.5.17 제정) 및 「경관법시행령」(07.11.13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현 조례를 「경관법」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살린 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조례 제명을 「경관법」에 맞게 변경함

- 조례에서 경관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하므로 조례의 명칭을 「평창군경관조례」로 변경

2) 경관사업의 대상(안 제9조)

- 「경관법」에서 정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등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규정

3)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경관사업 및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 지원근거 마련

- 4)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5)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경관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경관위원회 설치
- 6) 경관위원회의 심의 의제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19조)
 - 심의의제 대상
 - 군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등
 - 심의제외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응급복구 사업
- 7). 경관을 위한 권고 및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제한
 - 이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경관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진영)

가.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경관시책사업에 대하여 비용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경관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들로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 경관위원회 설치와 심의의제 및 제외대상 및 경관을 위한 권고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 조례안에 대하여,

- 안 제18조 제2항을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소위원회 또는 다른 적정한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보다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8년 11월 04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실무위원회의 업무성격과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 이에 조문을 적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안 제18조의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나. 안 제20조제6항의 "관허사업 제한"을 삭제함.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실무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20조제6항의 "관허사업 제한"을 삭제한다.